

울릉도쟁계(竹島一件)의 결착과 스야마 쇼에몽(陶山庄右衛門)*

송 휘 영**

(e-mail: hysong@ynu.ac.kr)

目次

1. 머리말
 2. 울릉도쟁계의 교섭과 그 경과
 - 1) 제1차 울릉도쟁계의 교섭
 - 2) 제2차 울릉도쟁계의 교섭
 3. 울릉도쟁계 교섭의 전환과 스야마 쇼에몽의 역할
 - 1) 울릉도쟁계의 전환과 스야마 쇼에몽
 - 2) 울릉도쟁계 교섭의 결착
 4. 울릉도쟁계의 결착에 대한 재평가
 5. 맺음말
-

1. 머리말

고려말부터 울릉도에는 여진과 왜의 약탈이 심하였고 이곳을 소굴로 하여 동해안 연안을 침략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섬의 거민을 육지로 데리고나와 울릉도는 빈 섬으로 황폐화 한다. 그러한 틈을 타서 쓰시마는 15세기 및 17세기 초반에 걸쳐 울릉도 영유를 획책¹⁾하였고 일본 서해안 연안의 어민들에게도 울릉

* 이 논문은 2009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중점연구소 지원에 의해 연구된 것임.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연구교수, 한일관계사

1) 1407년(태종7, 応永14) 3월 쓰시마도주 소 사다시게(宗貞茂)가 사신 다이라노 도오젠(平道全)을 조선 조정에게 파견하여 토산물을 헌납하고 왜구들이 납치해간 포로들을 송환하였다. 그와 동시에 울릉도에 쓰시마 사람들을 집단으로 이주시켜 쓰시마도주 자신이 통솔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태종은 “만약 국경을 넘어오는 일이 생기면 저들도 반드시 말썽을 일으킨다”고 하면서 쓰시마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또한, 1614년(광해군6, 慶長19)에는, 소 요시토시(宗義智) 도주가 조선 국 동래부사에게 서신을 보내어, 기죽도(磯竹島)를 조사(探見)하려고 하는데 큰 바람을 만날까 두려우니 길 안내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동래부사(東萊府使)인 윤수겸(尹守謙)과 박경업(朴慶業)

도가 노출되었다. 호키주(伯耆州) 요나고정의 어민 오야(大谷) 및 무라카와(村川)의 양가에 의해 죽도(울릉도) 도해면허에 대한 신청을 돛토리번을 통해 하기에 이르렀으며 막부는 1625년(寬永2) 돛토리번으로 한시적 면허를 내린다.²⁾ 그 후 안용복 등 조선어민이 출현하기까지 70년간 두 집안이 독점적으로 도해하여 어업을 지속하여 왔었다.

1693년(元祿 6) 4월 18일 조일 양국의 어민이 경합적으로 조업하던 중 안용복과 박어둔을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를 계기로 울릉도를 둘러싼 조일양국의 영토분규가 발생하게 되었다. 돛토리번으로 두 사람을 데리고 간 오야가(大谷家) 선원들은 자신들의 조업권을 침해당하였다고 판단하여 번을 통해 막부에 제소하였고 막부는 두 사람을 나가사키와 쓰시마를 통해 송환하고 조선인들의 죽도 출어를 금지하게 하라는 지시를 쓰시마번에 내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울릉도쟁계 즉 죽도일건의 시작이다. 막부의 명을 받은 쓰시마번은 1693년 11월 다다 요자에몽(多田与左衛門)을 정사로 하여 안용복 등을 데리고 부산 왜관으로 향하였고 단순한 조선인의 죽도 출어금지 조항에 ‘일본의 죽도’로의 출어금지라고 하여 죽도³⁾ 영유권 문제로 확대하여 서계를 동래부를 통해 조선 조정에 전달하게 되었다. 일찍부터 쓰시마는 죽도 영유를 수차례 계책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기회에 막부의 힘을 등에 업고 울릉도 탈취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조선 조정은 ‘귀계죽도’로의 출어는 금하겠으나 ‘폐경지울릉도’조차 해금을 하고 있다는 다소 애매한 답서를 보냈다. 즉 ‘2도2명’으로 사태를 수습하고자 하는 조선 조정의 소극적 의도가 담긴 내용이었다.

여기서 울릉도라는 명칭만 제거한다면 조선이 죽도(울릉도) 영유를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쓰시마번은 집요하게 ‘울릉도’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서계를 개찬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던 사이에 조정에서는 소론계 강경파가 집권을 하였고 접위관 유집일이 안용복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해 막부의 의도가 아닌 쓰시마번의 계책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처음 보낸 서계를 회수하여, ‘죽도·기죽도는 곧 우리나라의 울릉도로 귀국 어민의 월경을 금한다’는 취지의 서계를 보내어 강경하게 대응하였다. 그리하여 1695년 여름까지 3년에 걸친 울릉도쟁계 교섭은 교착상태가 계속되었다. 그러나 1695년 10월 에도 참근(江戸参覲)을 계기로 죽도 즉 울릉도의 정황을 에도 막부가 파악하게 되었고 이듬해 1696년

의 서신을 통해 기죽도는 조선의 울릉도로 이는 여지도에 실려 있으며, 만일 점거할 경우 해적으로 간주한다고 하여 강경하게 거절하였다. 『太宗實錄』太宗 7年 3月条 및 『通航一覽』卷百三十七.

2) 「죽도도해면허」가 내려진 시기는 1618년 설, 1620년 이후라는 설, 1625년 설 등이 있었으나 최근 1625년이라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池内敏(2006), pp.245-250 및 송병기(2007), pp.54-56.

3) 당시 일본에서는 울릉도를 두고 기죽도(磯竹島), 의죽도(磯竹島) 혹은 죽도(竹島)라고 불렀다. 이하에서 ‘죽도’라 함은 특별히 주지하지 않는 한 울릉도를 가리키는 것임을 밝혀둔다.

1월 28일 「죽도도해금지」를 명함으로써 울릉도쟁계는 결착을 보게 된다.

지금까지 울릉도쟁계(竹島一件)의 해결 과정에 대한 연구에서는 남구만의 소론계 정권이 강경노선으로 선회함으로써 울릉도쟁계의 결착을 유도하였다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었다.⁴⁾ 그러나 쓰시마번 내부에서도 죽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이 무리라는 것과 번내 강경파에 대해 이치에 합당한 현실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온건파의 주장이 일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온건파인 스야마 쇼에몽(陶山庄右衛門)에 초점을 맞추어 울릉도쟁계의 결착과정을 조명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1695년 6월 이후부터 1696년 1월의 「죽도도해금지령」이 내려지기까지의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즉 일본측 사료를 중심으로 하여 울릉도쟁계의 과정을 재평가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의 국내의 울릉도쟁계에 대한 연구가 주로 국내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에 대해 본고에서는 『죽도기사』 및 『죽도문답』 등 일본측 1차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안용복 사건’과 ‘울릉도쟁계’를 보다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며 17세기말 한일관계사를 짚어보는 데에도 일조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울릉도쟁계의 교섭과 그 경과

1) 1차 울릉도쟁계의 교섭

안용복(安龍福)과 박어둔(朴於屯)의 납치사건⁵⁾을 계기로 막부는 1693년 5월 13일 연행해온 조선인을 나가사키(長崎)로 이송하여 쓰시마(對馬島)를 통하여 송환하고, 조선인의 죽도출어를 금지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 명령은 5월 25일에 돗토리번에 전달되었고 쓰시마번에는 6월 3일에 도착하였다(<표1>을 참조). 1693년 6월 7일 돗토리 성하를 떠나 육로⁶⁾로 나가사키에 도착한 것은 6월 30일이었고, 7월 1일 나가사키 봉행소(奉行所)⁷⁾로 인계되어 몇가지 조사를 받았다. 다만 안용복의 귀국 후의 진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곳 나가사키에서는 지금까지 십수명의 수행원을 붙여 가마로 호송했던 후대와는 달리 죄인 취

4) 예를 들어, 송병기(2007), pp.91-95., 신용하(1996), pp.147-149를 참고할 것.

5) 1693년 4월 18일에 발생한 두 사람의 납치사건을 ‘안용복의 1차도일’이라 부르고, 3년 뒤인 1696년 5월에 자진하여 도일하게 되는데 이를 두고 ‘안용복의 2차도일’이라고 불려왔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 두 가지 사건을 분리해서 1차 도일을 ‘납치사건’ 2차 도일을 ‘도일’로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 표기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예를 들어, 池内敏(2008), 「安龍福と鳥取藩」, 『鳥取地域史研究』第10号, 鳥取地域史研究学会, pp.17-28을 참조.

6) 돗토리번에서는 납치된 두 사람이 흉폭한 행동을 할까 염려하여 육로로 이송하였다. 『竹島紀事』元祿六年 六月条를 참조.

7) 가마쿠라(鎌倉)시대 이후 봉행(奉行)이 재판·사무 등의 업무를 보는 관청(役所)을 두고 일컬었던 말임.

급을 하여 두 사람을 가두고 심문을 하게 된다. 다시 8월 14일에 쓰시마번 사자에게 인계되어 쓰시마 후추(府中)에 도착한 것은 9월 3일이었다(<표1>). 안용복에 대한 쓰시마번의 대응도 아주 차가웠고 그를 포박하여 죄인 취급을 하였으며 그에 대한 심문을 위해 약 2개월간 쓰시마에 억류하였다.

<표1> 울릉도쟁계(죽도일건) 관련 연표

연도	날짜	내역	비고
1692 (元祿5)	3.27	무라카와가(村川家)의 배가 죽도(울릉도) 하마다우라(浜田浦)에서 배 2척과 조선인 30명과 조우	竹嶋之書附
1693 (元祿6)	4.17	오야가(大谷家) 죽도(鬱陵島) 도착 조선인과 조우	竹島考
	4.18	안용복·박어둔을 연행하여 죽도를 출발	竹島紀事
	4.20	일행 후쿠우라(福浦)에 도착	竹島考
	4.27	요나고(米子)에 도착	竹嶋之書附
	5.10	요나고에서 「조선인 구술서」 작성 에도에 보고	御用人日記
	5.13	막부 조선인들 나가사키 이송과 죽도출어금지 요청(5.25 돗토리번, 6.3 쓰시마번 도착)	竹島紀事
	6.30	안용복 일행 나가사키 도착	竹島紀事
	9.3	안용복 일행 쓰시마에 도착	竹島紀事
1693 (元祿6)	11.1	다다 요자에몽(多田與左衛門) 부산에 도착(1차교섭 시작)	竹島紀事
	12.10	다다와 동래부사 홍중하와 교섭(안용복 인도) 소 요시즈구(宗義倫)의 서간이 넘겨짐	竹島紀事
1694 (元祿7)	2.22	다다 요자에몽 귀국(1차교섭 종료)	竹島紀事
	5.13	전관 다다(多田)가 도선주 야나기 사에몽(柳左衛門), 봉진 데라사키 요시에몽(寺崎與四右衛門)과 함께 재차 건너와 답서 개관요구(2차교섭 시작) 접위관 유집일 임명, 울릉도가 조선땅이라는 서계 전달	竹島紀事
	8.14	예조참판 이여(李奮) 명의의 2차서계 작성	肅宗實錄
1695 (元祿8)	5.11	스기무라 우네메(杉村采女), 스야마 쇼에몽 왜관 도착	竹島紀事
	5.15	4개조혈문서 동래부에 제시, 5.30까지 회답요구	竹島紀事
	6.10	왜관을 떠남(2차교섭 종료)	竹島紀事
	7.8	스야마 쇼에몽이 가시마 효스케에 죽도의 건을 문의	竹島文談
	7.13	가시마의 답신	竹島文談
	8.30	소 요시자네(宗義眞) 일행 에도로 떠남	竹島紀事
	10.15	소 일행 에도 도착	竹島紀事
	12.24	돗토리번저에 죽도에 대한 7개조 질의서 전달	竹島紀事
1696 (元祿9)	1.28	죽도도해금지령 노중 입회하에 쓰시마번과 돗토리번에 전달	御用人日記
	2.29	돗토리번이 받은 막부의 죽도도해허가 반납	磯竹島覺書
	8.1	죽도도해금지의 봉서 오야·무라카와 양가에 전달	御用人日記

9월 4일 쓰시마번은 우치노 규로자에몽(内野九郎左衛門)으로 하여금 두 조선인을 심문하게 하였고, 9월 24일 나가사키 봉행이 다시 ‘향후 죽도에 조선인이 도해하지 않도록 하라’는 로쥬(老中⁸⁾)의 의향을 전달하였다.⁹⁾ 안용복을 심문하면서 쓰시마번 내부에서는 막부가 내린 명령의 의도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 의견도 나타났다. 만일 막부가 죽도를 호키국의 소속으로 생각하였다면 1620년 야자에몽¹⁰⁾의 체포를 호키국(伯耆国)¹¹⁾에 명령했을 것이다. 이것을 쓰시마번에 명령한 것은 막부가 죽도를 조선영토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르며 이를 막부에 문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소 요시자네(宗義真)¹²⁾의 측근인 가노 고노스케(加納幸之助)를 통해 제시되었다.¹³⁾ 그러나 그때의 중론은 막부의 명령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었고 그 이상의 논의는 없었다. 쓰시마번으로서도 막부의 명령은 절대적인 것으로 죽도가 조선땅이라고 하더라도 그 명령에 따라 그 섬에 조선인의 출어를 금지하도록 조선에 요구하기로 방침을 결정하였다.¹⁴⁾

10월 22일 쓰시마번은 다다 요자에몽을 정사(正使)로 하여 쓰시마에서의 조사를 마친 두 사람을 데리고 후츄를 출발하여 11월 1일에 부산 절영도에 도착하였다. 부산의 초량왜관에서 11월 2일부터 동래부에 건네주기까지 1개월 9일을 더 체류하게 된다(<표1>). 울릉도쟁계의 제1차 교섭이 시작된 것이다. 다다 요자에몽은 동래부사 홍중하(洪重夏)와 교섭에 임하면서 안용복과 박어둔을 조선측에 건네주었고 아울러 ‘일본의 죽도(本国竹島)¹⁵⁾’에 조선어민들이 건너가는 것을 금해 달라는 소 요시즈구(宗義倫)의 서간도 전달하였다.

8) 에도 막부의 최고의 직명으로 도시요리(年寄)라고도 하였다. 장군 직속으로 정무 일반을 총괄하였으며 지금의 대신 또는 장관에 상당한다.

9) 『竹島紀事』元禄六年 九月四日条 및 九月二十四日条.

10) 『通航一覽』卷百三十七을 참조. 이 사건은 1620년(元和6)에 울릉도에서 거주하며 밀무역을 하다가 에도로 알려져 체포된 사건으로, 막부는 쓰시마번으로 하여금 사기사카 야자에몽(鷺坂弥左衛門)·니에몽(仁右衛門) 부자를 포박하여 에도로 호송하도록 하였다. 사기사카는 이소타케(磯竹弥左衛門) 또는 다케시마(竹島弥左衛門)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사건의 구체적 경위는 「元和覚書」에 기록되어 있으며, 당시 에도와 쓰시마번은 기죽도(磯竹島=울릉도)가 조선령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11) 현재 돗토리현(鳥取縣) 서부지역의 옛이름.

12) 소 요시자네(宗義真, 1639-1702)는 1657-1692년까지 쓰시마번의 3대번주로 가독을 이어받았다. 1692년 차남인 요시토모(義倫)에게 가독을 물려주나 1694년 일찍 사망하자 어린 요시미치(義方)가 5대번주에 취임하자 섭정을 하면서 조선과의 울릉도쟁계 등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 하였다.

13) 전계서, 元禄六年 九月四日条.

14) 박병섭(2007), 『안용복 사건에 대한 검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p.44를 참조.

15) ‘본국 죽도(本国竹島)’라는 표현에 대해 송병기(2008)는 막부가 지시한 ‘죽도로의 출어금지 요청’에 쓰시마번이 ‘본국’을 추가한 것은 죽도 영유권 문제를 들고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송병기, 「安龍福의 活動과 竹島(鬱陵島)渡海禁止令」, 『東洋學』, 제43집, 단국대학교동양학연구소, 2008, p.5를 참조.

(A-①) 귀국의 바닷가 어민들이 근년에 본국의 죽도에 배를 타고 와서 몰래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데, 이곳은 절대로 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관(土官)이 국금(國禁)임을 상세히 알려 다시는 오지 못하게 하고, 이내 저들을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올봄에 또다시 국금을 아랑곳하지 않고 어민 40여 명이 죽도에 들어가서 뒤섞여서 고기잡이를 하였습니다. 이에 토관이 그 어민 중에서 2명을 구류하여 주사(州司)의 인질로 바쳐 일시의 증거로 삼도록 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나바주(因幡州)의 주목(州牧)이 즉시 전후의 상황(事狀)을 들어 에도(東都)에 치계(馳啓)하였던 바, [에도에서] 저들 어민을 폐읍(弊邑)에 맡겨 본토로 돌려보내 주고 이 뒤로는 그 섬에 어선이 절대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여 금제(禁制)를 더욱 엄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겐로쿠(元祿) 6년 계유(癸酉, 숙종 19, 1693) 9월 일] 16)

내용은 작년(1692)에 이어 조선의 어민이 다시 일본의 죽도에 어업을 하였으므로 일본의 토관이 와서는 안 되는 곳이라 일렀음에도 듣지 않아 두 명의 어민을 인질로 삼았다고 하였고, 막부의 명에 따라 이들을 돌려보냄과 동시에 향후 조선인이 죽도에 출어하지 않도록 요구하였던 것이다. 원래 막부에서 하달한 내용에서 ‘본국’의 죽도라고 함으로써, 단순한 독점적 어업지라고 생각했던 울릉도(죽도)에 건너오지 말아달라는 요구에서 쓰시마번으로서는 이전부터 울릉도 영유를 기도해오던 터라 ‘본국의 죽도’라는 영유권 문제로 삼았던 것이다. 또한 작년에 연변으로 도해하였던 무라카와가(村川家)의 어부를 토관(土官)으로 격상시키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조선의 조정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임진왜란의 경험이 있는 조선은 일본과의 충돌을 걱정하여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인 것만을 암시하는 것으로 ‘2도2명설’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예조참판 권계(權階)의 명의로 대마도주 앞으로 보내는 제1차 답서는 다음과 같다.

(A-②) 폐방(弊邦)은 해금(海禁)이 지극히 엄하여 바닷가 어민을 단속하여 외양(外洋)에는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지경인 울릉도(弊境之蔚陵島)라 하더라도 거리가 멀므로 절대로 마음대로 왕래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하물며 그 밖이겠습니까? 이번에 어선들이 감히 귀계의 죽도(貴界竹島)에 들어가 번거롭게 압령(押領)해 보내고 먼 길에 서계를 띄워 일러 주기까지 하니 인호(隣好)의 정리가 참으로 고맙습니다. 어민이 고기를 잡아 생계를 꾸려 나가자면 혹 바람을

16) 「貴城瀕海漁氓、比年行船於本國竹島、竊爲漁採、極是不可到之地也、以故土官詳諭國禁、固告不可再、而乃使渠輩盡退還矣、然今春亦復不顧國禁、漁氓四十餘口、往入竹島、雜然漁採、由是土官拘留其漁氓二人、而爲質於州司、以爲一時之證、故我因幡州牧速以前後事狀馳啓東都、令彼漁氓附與敝邑以還本土、自今而後決莫容漁船於彼島、彌可制禁云、」 『竹島紀事』元祿6年(1693) 10月條.

만나 표류할 염려가 있으나, 경계를 넘어 깊이 들어가서 뒤섞여서 고기잡이를 하는 것은 법으로 엄하게 징계해야 하겠습니다. 이번에 범인들은 법률에 의거하여 과죄(科罪)하고 이 뒤로는 연해 각처에 엄히 과조(科条)를 설정하여 특별히 신칙(申飭)하겠습니다. [계유년(元祿6, 1693) 12월 일] 17)

이 답서를 받은 대마도에서는 ‘폐경지울릉도(幣境之鬱陵島)’를 거론한 조선측의 의도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 한편 이 울릉도란 문구만 삭제되면 조선으로부터 죽도(울릉도)의 지배를 실질적으로 추인하는 것이 되므로, 이 문구를 삭제하지 않으면 에도 막부로부터 중죄를 면치 못할 것이라며 죽도만 기재하고 울릉도는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정관 다다(多田)는 접위관의 유화책을 거부하고 울릉도는 임진왜란 이후 일본의 영토가 되었으니 조선인의 왕래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였고 강경한 주장으로 맞섰다.¹⁸⁾ 그러나 이 구절의 삭제 문제를 두고 양국간에 팽팽한 대응이 이어졌지만 결국 교섭은 결렬되었다. 이렇게 3개월의 기간 동안 펼쳐졌던 교섭은 1694년 2월 22일 다다 요자에몽이 쓰시마로 귀국함으로써 끝이 났다. 이로써 1차 울릉도쟁계의 교섭은 일단락 지워지게 되었다.

2) 2차 울릉도쟁계의 교섭

본국으로 소환되었던 다다 요자에몽이 1694년 윤5월 13일 대차사(差倭)의 자격으로 재차 부산 왜관으로 왔다. 서계 개찬 교섭의 목적으로 다시 파견된 것으로 ‘폐경지울릉도’라는 구절의 삭제를 요구하는 쓰시마번주 소 요시츠구의 서계를 전달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조선에서 받은 서계를 납득할 수 없다며 돌려주고자 하였다. 이에 조정에서는 유집일(兪集一)을 접위관으로 임명하여 동래부에 파견하였고 2차 교섭이 시작된 것이다. 다다는 그가 조선에 재차 파견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가지 않으려고 하였다. 당시 조선에서는 갑술옥사(甲戌獄事)로 남구만(南九萬)의 소론계 정권이 집권하여 강경노선으로 급선회하여 울릉도를 일본에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숙종에게 진언한 것을 알고 있었다. 그 동안 조선 조정에서는 동래부의 보고를 바탕으로 쓰시마측이 삭제를 요구하는 진의가 일본의 울릉도 침탈에 있다고 판단하여 남구만·윤지완 등은 지난번의 답서를 되찾아 와서 일본인의 울릉도 도해를 문책할 것을 숙종

17) 『敵邦海禁至巖、浜海漁民、使不得出於洋、雖幣境之鬱陵島、亦以遼遠之故、切不許任意往來、況其外乎哉、今此漁民敢入貴界竹島、致煩領送遠勤書論、鄰好之誼實所欣感、海嶼獵魚以為生理、或不無過風漂轉之患、而至越境深入、雜然漁採、法當痛懲、今將犯人等、依科条各別申飭、』 『竹島紀事』元祿六年(1693)十二月条.

18) 『竹島紀事』元祿六年(1693)十二月条, ‘正官口上’을 참조할 것.

에게 건의하였다. 또한 일본이 울릉도를 점거할 경우 강원도 연안 지방이 피해를 입을 것을 걱정하여 장한상(張漢相)을 삼척 첨사(僉使)로 삼아 울릉도에 파견하고 진을 설치(設鎭)하기 위한 조사를 하도록 하였다.¹⁹⁾ 거민을 모집하여 이주하게 하고 진을 설치하여 지키게 한다면 일본이 노리는 근심거리를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유집일이 안용복과의 상담을 통해 서계에서 ‘죽도’란 말은 쓰시마도주가 에도에 공을 세우기 위한 계획이었음을 비로소 알아차렸다. 남구만이 전일의 답서를 고쳐 이여(李餘)의 명의로 작성한 서계를 전달하였다. 두 번째 답서는 다음과 같다.

<예조참판 이여(李餘) 명의의 2차 답서>

(A-③) 우리나라 강원도의 울진현(蔚珍縣)에 속한 울릉도란 섬이 있는데, 본현(本縣)의 동쪽바다(東海) 가운데 있고 파도가 험악하여 뱃길이 편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몇 해 전에 백성을 옮겨 땅을 비워 놓고, 수시로 공차(公差)를 보내어 왕래하게 하여 수검(搜檢)하도록 했습니다. 본도(本島)는 봉만(峰巒)과 수목을 내륙(內陸)에서도 역력히 바라볼 수 있고, 무릇 산천(山川)의 굴곡과 지형이 넓고 좁음 및 주민의 유지(遺址)와 나는 토산물(土產物)이 모두 우리나라의 《여지승람(輿地勝覽)》이란 서적에 실려 있어, 역대에 전해 오는 사적이 분명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해변의 어민들이 이 섬에 갔는데, 의외에도 귀국(貴國) 사람들이 멋대로 침범해와 서로 맞부딪치게 되자, 도리어 우리나라 사람들을 끌고서 에도(江戶)까지 잡아갔습니다. 다행하게도 귀국 대군(大君)이 분명하게 사정을 살펴보고서 넉넉하게 노자(路資)를 주어 보냈으니, 이는 교린(交隣)하는 인정이 보통이 아님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높은 의리에 탄복하였으니, 그 감격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백성이 어채(漁採)하던 땅은 본시 울릉도로서, 대나무가 생산되기 때문에 더러 죽도(竹島)라고도 하였는데, 이는 곧 하나의 섬을 두 가지 이름으로 부른 것입니다. 하나의 섬을 두 가지 이름으로 부른 상황은 단지 우리나라 서적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귀주(貴州) 사람들도 또한 모두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온 서계(書契) 가운데 죽도를 귀국의 지방이라 하여 우리나라로 하여금 어선(漁船)이 다시 나가는 것을 금지하려고 하였고, 귀국 사람들이 우리 나라 지경을 침범해와 우리나라 백성을 붙잡아간 잘못은 논하지 않았으니, 어찌 성신(誠信)의 도리에 흠이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깊이 바라건대, 이런 말뜻을 가지고 동도(東都)에 전보(轉報)하여, 귀국의 변방 해안(海岸) 사람들을 거듭 단속하여 울릉도에 오가며 다시 사단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면, 서로 좋게 지내는 의리에 있어 이보다 다행함이 없겠습니다.²⁰⁾

19) 『肅宗實錄』, 肅宗 20年 7月條.

20) 『弊邦江原道蔚珍縣 有屬島曰鬱陵 在本縣東海中 而風濤危險 船路不便 故中年移其民空其地 而時遣公差 往來搜檢矣. 本島峰巒樹木 自陸地歷歷望見 而凡其山川紆曲 地形濶狹 民居遺址 土物所產 俱載

이 2차 답서에서 울릉도는 강원도 울진현의 동쪽 바다 가운데 위치한 섬으로 죽도와 울릉도는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섬이며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일본인의 울릉도로의 도해 금지를 요청하여, 1차 서계에 비해 대단히 강경한 것이었다. 이에 차왜가 ‘침범해 오다’는 것과 ‘붙잡아 갔다’는 표현 등을 고쳐달라고 청하였으나 유집일이 들어주지 않았다. ‘울릉’이라는 두 글자를 삭제해 주기를 청한 서계의 회답을 받고자 하였으나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다(多田)는 오랫동안 동래에 머물면서 돌아가지 않고 기어코 자신이 청한 것을 성사시키려 하였다. 1694년 5월부터 이듬해인 1695년 5월까지도 울릉도 문구를 삭제하기 위한 서계 개찬작업은 해결되지 않았다. 다다 요자에몽이 1년 동안 버티었으나, 교착상태가 계속될 뿐이었다.²¹⁾

이에 쓰시마번은 1695년 5월 11일 정사 스키무라 우네메(杉村采女)와 도선주(都船主) 스야마 쇼에몽을 파견하여 다다 요자에몽과 함께 서계 개찬작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남구만 정권은 강경한 태도를 바꾸지 않았으며 두 번째 서계(울릉도 삭제를 요구한 쓰시마번주의 2차 서계)의 답신은 끝내 들어주지 않았다. 그리하여 쓰시마번청은 재판(裁判)²²⁾ 다카세 하치에몽(高瀬八右衛門), 스야마 쇼에몽(陶山庄右衛門), 아비루 소베에(阿比留惣兵衛)로 하여금 정사 이하 귀국을 명하였다.²³⁾ 정사 다다 요자에몽(多田与左衛門)²⁴⁾은 재판 다

於我國輿地勝覽書 歷代相傳 事跡昭然. 今者我國海邊漁氓 往于此島 而不意貴國之人 自爲犯越 與之相值 乃反拘執我人 轉到江戶 幸蒙貴國大君 明察事情 優加資遣 此可見交隣之情 出於尋常 欽歎高義 感激何言. 雖然我氓漁採之地 本是鬱陵島 而以其產竹 或稱竹島 此乃一島二名也 一島二名之狀 非從我國書籍之所記 貴國人亦皆知之 而今此來書中 乃以竹島爲貴國地 方欲令我國禁止漁船之更往 而不論貴國人侵涉我境 拘執我氓之失 豈不有欠於誠信之道乎 深望將此辭意 轉報東都 申飭貴國邊海之人 無令往來於鬱陵島 更致事端之惹起 其於相好之誼 不勝幸甚., 『肅宗實錄』肅宗20年 8月 23日條.

21) 다다 요자에몽은 2년에 걸쳐 왜관에 머물면서 반드시 요구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자신이 사신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조정이 사신의 준례로 하사한 물품을 받지 않고 헤진 옷을 입고 거지 행세를 하기도 하면서 여러 고초를 겪는다. 그는 끝내 태도를 바꾸지 않았고 그의 행실로 인하여 민심이 흉흉하여 임진왜란과 같은 변란이 장차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소문이 일기도 하였다. 『肅宗實錄』肅宗21年 6月 20日條.

22) 에도시대 외교관계를 담당하고 있던 직명으로 초량왜관에도 외교담당관으로 재판(裁判)을 두고 있었다.

23) 이때의 교섭단은 4월말에 쓰시마를 출발하여 5월 1일 부산에 도착하는데, 참관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정관(正官) 스키무라 우네메(杉村采女), 부관(副官) 이쿠타비 로쿠에몽(幾度六衛門), 도선주(都船主) 스야마 쇼에몽(陶山庄右衛門), 봉진역(封進役) 기데라 도시베에(木寺利兵衛)로 구성되었다. 정관은 정사(正使), 부관은 차관, 도선주는 사절단 일행의 단장으로 실무관의 총책임자였으며, 봉진역은 헌상할 물품과 서한의 담당자로 일행의 회계책임자였다. 이들은 1695년 2월에 지명되어 4월말에 4척의배로 후츄(府中)를 출발한다. 일행의 총인원은 74명이었다. 5월 11일에 부산의 초량왜관에 들어가 약 1개월에 걸쳐 동래부와의 외교교섭을 계속하게 된다. 그러나 이 교섭은 타결되지 않아 6월 10일 부산을 출발, 6월 17일 쓰시마 후츄(府中)로 돌아왔다. 권오엽·오니시 도시테루(2010), pp.267-8.

카세(高瀨)와 상의한 다음, 1695년 5월 15일 동래부사에게 서신을 보내어 예조서계에 대한 의문점 4가지를 열거하면서 조선국 정부의 불신을 힐책하는 글을 조정에 전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침 일본에서는 다다(多田=굴진중)를 소환하여 귀국(歸國)하라고 하였으므로, 6월 15일을 기를 떠나는 시기로 잡고 동래부에 편지를 보냈다. 네 가지 조항을 힐문(詰問)하며 이를 조정에 전달해서 한 달 이내로 개시(開示)해 줄 것을 청하였던 것이다.

<4개조 힐문서> 1695.6.10

(A-④) ①답서(答書) 가운데, ‘수시로 공차(公差)를 파견하여 왕래하며 수색하고 검사하게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삼가 살펴보건대, 인번(因幡)·백기(伯耆) 두 주(州)의 변민(邊民)들이 해마다 죽도(竹島)에 가서 고기잡이를 하여, 2주(州)가 해마다 그 섬의 북어(鰵魚)를 동도(東都)에 바치는데, 그 섬은 바람과 물결이 위험하므로, 해상(海上)이 안온(安穩)할 때가 아니면 왕래할 수가 없습니다. 귀국(貴國)에서 만일 실지로 공차(公差)를 파견한 일이 있다면 역시 분명히 바다가 안온할 때였을 것입니다. 대신군(大神君)으로부터 지금까지 81년 동안 우리나라 백성들이 일찍이 귀국에서 공식적으로 파견한 사자(使者)들과 그 섬에서 서로 만났다는 사실을 상주(上奏)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 회답하는 서신 가운데는 ‘수시로 공차(公差)를 파견하여 왕래하며 수색하고 검사하게 하였다.’고 말한 것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습니다.

②회답하는 서신 가운데, ‘뜻밖에 귀국의 사람이 스스로 범월(犯越)하였다.’ 하고, ‘귀국의 사람들이 우리 국경을 침범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삼가 살펴보건대, 양국(兩國)이 통호(通好)한 이후에 죽도(竹島)를 왕래하던 어민(漁民)들이 표류하여 귀국 땅에 이르면 예조 참의(禮曹參議)가 표류민(漂流民)을 되돌려 보내는 일로 폐주(弊州)에 서신을 보낸 것이 모두 세 차례입니다. 우리나라의 변방 백성들이 그 섬에 가서 고기잡이한 실상은 귀국이 일찍이 알고 있던 바인데, 아주 오래 전에 우리 백성들이 그 섬에 가서 고기잡이한 것을 범월(犯越)이나 침섭(侵涉)한 것으로 여겼다면, 일찍이 종전 세 차례의 서신 가운데에서는 어찌하여 범월과 침섭의 뜻을 말하지 아니하였습니까?

24) 쓰시마의 가로(家老)였던 다다 요자에몽은 중국식 이름으로 다치바나 마사시게(橋眞重, 굴진중)라고도 한다. 그의 족적을 살펴보면, 1693년 이 죽도일건으로 최초의 사자로서 부산으로 건너간다. 다다가 쓰시마의 후츄를 출발한 것은 1693년(겐로쿠 6) 10월 22일의 일로, 안용복과 박어둔을 데리고 부산 절영도를 거쳐 초량왜관에 도착한 것은 11월 2일이다. 그 후 왜관에 머물며 조선과의 사이에서 곤란한 교섭을 해나간다. 다시 쓰시마에 돌아오는 것은 1694년의 일로 2월 22일에 승선하여 그는 24일에 쓰시마의 북쪽 와니우라(鰐浦)에 도착하였다. 후츄(府中)에 들어오는 것은 27일이다. 이때 조선에서 받아들인 서한에 죽도와 울릉도라고 하는 1도2명의 기재가 있었던 것이다. 「귀계죽도」, 「폐경지울릉도」가 그것이다. 하지만 이 울릉도라는 문구는 소 요시자네(宗義眞)과 번의 가신들의 의향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 이 문구의 삭제를 위해 다시 다다가 사자로 도해하기를 명하게 된다.

③회답하는 서신 가운데, ‘동일한 섬이 두 가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사실은 다만 우리나라 서적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귀주(貴州)의 사람들도 또한 다 안다.’고 하였습니다. 귀국이 일찍이 동일한 섬이 두 가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서적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상고하고, 또 ‘동일한 섬이 두 가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폐주(弊州)의 사람들도 또한 다 안다.’고 생각하였다면, 첫번째의 답서(答書)에서는 어찌하여 ‘귀계(貴界)의 죽도(竹島)는 폐경(弊境)의 울릉도(鬱陵島)이다.’라고 말하였습니까? 만일 애당초 죽도가 바로 울릉도인 줄 알지 못하고 두 섬이 두 이름으로 되었다고 생각하였다면, 지금의 답서(答書)에서는 어찌하여, ‘동일한 섬이 두 가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실상은 다만 우리나라 서적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귀주(貴州)의 사람들도 또한 다 안다.’고 말하였습니까?

④삼가 살펴보건대, 82년 전 폐주(弊州)에서 동래부에 서신을 보내어 의죽도(儀竹島)를 자세히 조사하는 일을 알리니, 동래 부사의 답서(答書)에 이르기를, ‘본도(本島)는 바로 우리나라의 이른바 울릉도(鬱陵島)라는 곳으로서 지금은 비록 황폐해져 있으나, 어찌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점거하는 것을 허용하여 시끄럽게 다투는 단서를 열겠는가?’ 하였고, 그 두번째 답서도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그런데 78년 전에 본방(本邦)의 변민(邊民)이 그 섬에 고기잡이하러 갔다가 표류하여 귀국 땅에 이르렀을 때 예조 참의가 폐주(弊州)에 보낸 서신에, ‘왜인(倭人) 마다삼이(馬多三伊) 등 7명이 변방의 관리에게 체포되었기에 그들이 온 연유를 물어보니, 울릉도에 고기잡이하러 왔다가 풍랑을 만나 표류하여 온 자였다. 이에 왜선(倭船)에 태워 귀도(貴島)로 돌려보낸다.’고 하였습니다. 대개 82년 전에 ‘어찌 다른 사람이 함부로 점거하는 것을 허용해서 시끄럽게 다투는 단서를 열겠는가?’라고 말하였다면, 78년 전에 다른 사람이 가서 고기잡이한다는 것을 듣고 허용하였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회답하는 서신 가운데, ‘동일한 섬이 두 가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귀주(貴州)의 사람들도 또한 다 안다.’고 말한 것은 82년 전 동래부의 답서에 ‘의죽도(儀竹島)란 실은 우리나라의 울릉도이다.’라고 한 문구가 있기 때문입니까? 82년 전의 서신과 78년 전의 서신의 내용이 서로 부합되지 않으니, 지금 청문(請問)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²⁵⁾

25) 「其一曰：回答書中言時遣公差，往來搜檢云。謹按因幡、伯耆二州邊民，年年往竹島漁採，二州年年獻彼島鯪魚於東都，彼島風濤危險，非海上安穩之時，則不得往來。貴國若實有遣公差之事，則亦當海上安穩之時。自大神君至今八十一年，我民未曾奏與貴國公差相遇于彼島之事，而今回答書中，言時遣公差往來搜檢者，未知何意也？其二曰：回答書中，不意貴國人自爲犯越云，貴國人侵涉我境云。謹按兩國通好之後，往來竹島之漁民，漂到于貴國地，禮曹參議以送返漂民，與書於弊州總三度矣。本邦邊民往漁于彼島之狀，貴國所曾知也，以上上年我民往漁于彼島，爲犯越侵涉，則曾前三度書中，何不言犯越侵涉之意乎？其三曰：回答書中一島二名之狀，非徒我國書籍之所記，貴州之人，亦皆知之云。貴國會考一島二名之狀，載于書籍之中，而又謂一島二名之狀，弊州之人，亦皆知之，則初度答書，何言貴界竹島弊境鬱陵島乎？若初不知竹島卽鬱陵島，而爲二島二名，則今之答書，何言一島二名之狀，非徒我國書籍之所記，貴州之人亦皆知之乎？其四曰：謹按八十二年前，弊州寄書於東萊府，以告看審儀竹島之事，府使答書云：“本島卽我國所謂鬱陵島者，今雖荒廢，豈可容他人之冒占，以啓閭閻耶？”其再答書亦然。

이 힐문서의 내용은 ①1694년 예조서계에서 “때로는 공차(公差)를 파견하여 왕래하며 수검(搜檢)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 ②답서 중에 “귀국인 스스로 월경을 하였다”, “귀국인이 우리 지경을 침범하였다”고 하는데 일본국 어민이 죽도에 출어하는 것은 조선의 국경을 범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③답서 중에 “1도2명의 상황은 우리나라 서적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귀주의 사람 모두 이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고 있으나, 1693년 예조 서계에 ‘귀계죽도’, ‘폐경지울릉도’라고 명기하여 1도2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것은 어떤 이유에 의한 것인가? 하는 점, 그리고 ④82년전 동래부사가 소씨에게 보낸 서계에는 “의죽도는 우리의 울릉도이다(磯竹島我鬱陵島也)”라는 구절이 보이는데, 이는 처음의 예조서계(1차 조선의 답서)에서 말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태도를 명확히 굳힌 조선에서 더 이상 회답을 얻지 못하자 다다는 6월 10일 왜관을 떠나 귀도의 길에 올랐다. 이로써 2차 교섭은 끝났다.

3. 울릉도쟁계 교섭의 전환과 스야마 쇼에몽의 역할

1) 울릉도쟁계의 전환과 스야마 쇼에몽

죽도에 대한 제2차 교섭이 성과 없이 끝나자 쓰시마번내에서는 그 대책을 두고 부심하였다. 조선 조정에서 건넨 두 차례의 서계는 물론 에도에 전달이 되지 않았고, 나중에 울릉도쟁계의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온건파인 스야마 쇼에몽과 같이 번내의 강경노선에 대한 반성이 일어났다. 타국의 섬을 억지로 빼앗아 에도의 공의로 바치는 방법은 불의라 할 수 있어도 충공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비판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²⁶⁾ 다다(多田)의 1차 교섭이 실패로 끝나자 스야마는 울릉도쟁계의 교섭에 대해 소 요시자네(宗義真)로부터 의견을 개진 받았다. 제1차 교섭 직후인 1694년 4월 15일 교섭에서 돌아온 다다도 함께 배석하였다. 스야마는 2가지의 대책을 제시하였고 제1책으로 지금까지 교섭과정을 모두 막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다음 조선과의 교섭에 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 제안은 소 요시자네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

七十八年前, 本邦邊民往漁于彼島, 漂到于貴國地之時, 禮曹參議與弊州書云: “倭人馬多三伊等七名, 被獲於邊吏, 問其來由, 則乃往漁于鬱陵島, 遇風漂到者也。茲付倭船, 送回貴島。” 蓋八十二年前, 言可容他人之冒占, 以啓鬧鬪耶, 則無七十八年前, 聞他人往漁而容許之理矣。今回答書中, 言一島二名之狀, 貴州之人, 亦皆知之者, 以八十二年前東萊府答書, 有磯竹島者, 實我國之鬱陵島也之句乎? 八十二年前書, 七十八年前書, 辭意不相合, 今不可不詰問之, 『肅宗實錄』肅宗21年 6月 20日條。

26) 陶山鈍翁(1915), 『竹島文談』, p.431 및 권오엽·오니시 도시테루(2010), p.185

러 강경파들 중에서는 멀지 않아 죽도가 일본의 소속이 된다고 확신하는 발언을 일삼기까지 하였다.²⁷⁾ 번내에서 향후의 교섭에 대해 어떤 견해나 의견을 가진 자의 소견을 문장으로 기록하여 제출하고 이를 모아서 울릉도쟁계의 해결책을 찾고자 하였다.

(B-①) 이번에 저는 조선에 건너가 그 나라와 왕복한 서한을 입수하였습니다. 한문과 일문의 것 모두 합하여 13통으로 이것을 번에 보여드리고자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귀하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13통은 제가 별도로 여분을 보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2~3일 보신 후에 확실한 비각 편으로 이쪽으로 다시 보내 주십시오. 이번에 우네메님에게 말씀 드렸습니다. 사이산지, 가노 고노스케님, 다키 로쿠로에몽님, 히라타 시게자에몽님 모두가 문제가 뛰어나고 조선의 사정도 충분히 아시는 분들입니다. 앞의 네 분들의 생각을 기록한 것을 받아 그 의견서를 번의 중신들이 보시면 죽도일건에 대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의견 청취를 의뢰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 죽도일건도 용이하게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씀드렸습니다.²⁸⁾

그러나 이러한 의견도 쓰시마번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번내에서 이 교섭의 논의에 가담한 집정관은 가로 스키무라 우네메(杉村采女), 사이산지(西山寺)의 주지, 가노 고노스케(加納幸之助), 다키 로쿠로에몽(滝六郎右衛門), 히라타 시게자에몽(平田茂左衛門) 그리고 스야마 쇼에몽(陶山庄右衛門)이었다. 위에서 보면 조선과 왕복한 서한과 관련 문서 13통을 집정관들은 검토를 하고 있었고 자신의 의견을 상의하고자 유배중 은거생활을 하던 가시마 효스케(賀島兵助)²⁹⁾에게 제시하고 있다. 스야마는 관련 문서를 보더라도 죽도가 일본의 섬이 아님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27) 울릉도쟁계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로쿠로에몽과 시게자에몽은 이번 일로 일본의 섬으로 이미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었다. 또한 이 분쟁은 일본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주변에 자주 이야기하곤 하였다.

28) 「今度某朝鮮へ罷渡、彼方と往復之書付真文和文共に十三通致進覽掛御目候、比十三通は某方に別に控無之候間、二三日御覽被成候はゞ、慥成る飛脚便にて比方へ御送登せ可被下候、比程采女殿へ申入候は、西山寺加納幸之助殿、滝六郎右衛門殿、平田茂左衛門殿文才も有之、朝鮮之事をも被存たる儀に御座候間、右四人之存寄書付させ御覽被成、御用に立ち可申儀に御座候はゞ、被仰聞被下候へかしと御頼被成候得、」『竹島文談』, p.429.

29) 가시마 효스케(賀島兵助, 1645-1697)는 쓰시마번정사에 이름을 남긴 후츄(府中)번사로 청렴결백한 행정가였다. 1675년 부대관(副代官)으로 히젠국(肥前国) 다시로(田代)로 가서 식립, 치수, 양잠 등을 추진하였다. 그 치적을 인정받아 1687년(貞享4) 오오메즈케(大目付)가 되었으나 제출한 의견서가 번주의 화를 불러 이나군의 고시타카무라로 유배(幽閉)되었다. 이후 귀양지에서 11년간 외롭게 지내다가 1697년 5월 이곳에서 병사하였다. 호는 조켄(怒軒)이라 하였으며 향년 53세였다. 『デジタル版 日本人名大辞典+Plus』 (<http://kotobank.jp/word/>)

(B-②)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엔 가령 귀하가 사자가 되어 조선에 건너가신다 해도 죽도를 일본의 섬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답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성공할 기세라 하더라도 이쪽에서 것처럼 이치에 맞지 않은 요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조선의 도리도 세우고 일본의 도리도 설 수 있도록 그러한 답서를 성심을 다하여 받아서 돌아오는 일입니다. 좋지 않은 답서를 요구하는 것 등에는 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귀하께서 그간 노고가 많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그에 비해 제 공이 적음을 느낍니다. 그러한 형편을 저는 걱정하고 있습니다.³⁰⁾

트집을 잡아 섬을 탈취하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아니하며 조선의 도리도 세우고 일본의 도리도 세울 수 있도록 성심의 예로써 답서를 받아야 하며 좋지 않은 무리한 답서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설령 가시마 효스케가 사신으로 가서 교섭에 임할 지라도 지금까지의 근거나 정황으로 보아 죽도를 일본의 섬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쓰시마에서는 지혜를 결집하기 위해 스야마가 네 명의 집정관에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가로(家老) 스키무라(杉村)에게 건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그러나 다른 세 명은 스야마가 내놓은 의견서에 대해 동의하지 못한다는 언급만을 되풀이 하였다. 그러나 조금씩 번내에서는 스야마의 의견이 인식되고 있었고 오히려 강경파인 세 명의 의견에 대해서는 번의 수뇌부에서도 신용하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강경파의 대응에 대해 ①에도의 장군에게 지금의 정황을 알려야 한다는 점, ②죽도와 울릉도는 2개의 섬이 아니라 1개의 섬이라는 점, ③답서를 왜관에 맡겨두고 가져오지 않은 잘못, ④죽도가 과거에는 조선에 속해있었다고 인정해야 하는 많은 점 등에 대해 조금씩 현실적 대응의 필요성이 일어나고 있었다.

스야마는 1695년 7월 7일 소 요시자네로부터 에도참근에 동행할 것을 명받는다. 에도 참근 때 그간의 정황을 설명하고 막부의 통지를 기다려 조선에 재차 건너가고자 생각하고 있었다.³¹⁾ 그 때문에 스키무라 우네메가 재차 조선에 건너가기로 한 계획도 연기가 되었던 것이다. 요시자네가 에도행 수행을 명령

30) 「此一件心易く相濟候存寄有之候由六郎右衛門殿茂左衛門殿と被申候由、方々にて承事に御座候、六郎右衛門殿は竹島今度日本之島に極申候様成行被遊方可有之事に候、公事者日本十分之御勝公事と申儀を度々某にも被申、近來も彌左様被申候と之儀方々にて承り申事に御座候得共、某見識にては尊公御使者に御波被成候、而も竹島を日本之島に極たる返翰御座被成候儀は、決て不相成儀にて、假令成申勢にて、此方より左様之不理成儀被仰掛間敷儀にて御座候、彼國之理も立、日本之理も立候御返簡を御心を被盡御取歸被成候ても、不_レ宜返翰など申候沙汰御座候ては、某には少も構不申候得共、尊公之御苦勞之功少き様成行申候段如何と奉存候、」、 「竹島文談」, p.429.

31) 권오엽·오니시 도시테루(2010), p.162.

한 것은 장군과 상담한 다음 그 후에 다시 사자를 파견할 생각이었고 에도의 도시요리들에게 전후의 사정을 스야마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처음 에도로부터 조선인의 도해를 금지를 명받았을 때 죽도의 사정을 에도에 충분히 보고하고 교섭에 임해야 했으나 장군의 명이라는 것만으로 즉시 조선에 강경하게 맞섰다는 것에 대해서도 쓰시마 내부의 양식 있는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B-③) 일본 막부는 그 섬의 내력을 조금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재작년(1693)에 쓰시마번에 이 교섭을 명하시어 다시는 조선인이 건너오지 않도록 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 취지를 확실히 저쪽에 전하라고 엄중히 명령하셨습니다. 그 때 그 섬의 사정을 장군에게 보고하라고 분별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사는 그러한 일에 동의하지 않고 그저 장군의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즉시 조선에 제기하였습니다. 조선에서 답서가 왔을 때도 그것을 장군에게 보고하여 승낙을 얻은 다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분별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집사의 생각으로 그런 일에 동의하지 않고 즉시 그 답장의 서한은 돌려주고 말았습니다. 조선의 기세는 그 때문에 바뀌어 지금의 답서는 일본을 크게 타하는 형태의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³²⁾

그리고 조선의 답서에 대해서도 에도에 보고하지 않은 채 쓰시마가 막부에 공을 세우고자 독자적으로 대처한 것에 대한 자성과 조선의 1차 답서를 반환한 것조차 번내 강경파의 일방적인 대응으로 에도와 상의했어야 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었다. 그로 말미암아 조선의 2차답서에서는 아주 강경한 자세로 바뀐 것으로 스야마는 생각하였다.

또한 가시마 효스케도 13편의 증빙문서들을 검토한 다음 울릉도가 조선의 속도로 일본의 부속섬이라는 증거가 전혀 없음을 인식을 하고 있었다.

(B-④) 이 서한의 문답을 보고 삼가 말씀 드립니다만, 울릉도는 조선의 속도입니다. 그리고 80년 전부터 일본에 속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증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표류민을 송환시켰을 때 조선이 보낸 서간문을 트집 잡아 어

32) 「日本之公儀は彼島之來歴援少しも御知も不被成候故、去々年御國へ之被仰付に、重て朝鮮人彼島に不罷越様に被申付-候得之旨、急度申渡候へとの御事に御座候、其節御國より彼島之儀を公儀へ可被仰上事と、心有る人は皆々申候得共、執事之心に同意無之、公命之趣を以て直に朝鮮へ被仰掛候、朝鮮より之御返簡到來之節公儀へ被仰出、御同意を御受被成思召入を被仰上候て、其上にて如何様共可被成儀と心有人皆々申候得共、執事之心に同意無之、また直に彼御返簡を被差返、朝鮮之勢變じ候て、只今之返翰は大に日本を咎たる紙面にて御座候、」 「竹島文談」, p.431-432.

떻게 해서든 이유를 만들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트집처럼 들립니다. 만약 이 쟁론에서 이겨 그 섬이 일본에 속하는 것으로 결정된다면, 그것은 표류민 송환 때 보낸 서간에 오류가 있었던 것을 트집 잡아 말로서 이긴 것입니다. 즉 트집으로 탈취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쪽에서 80년 전에 울릉도를 일본의 부속으로 했다고 하는 증문이 있다면 그것을 제출해달라고, 혹시 말했다면, 이쪽에 증문이 될 만한 것이 있을까요. 세 번의 서간은 표민을 보내기 위한 서간이라고는 하나 증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저쪽에서 송환시 보낸 답변의 서부에, 단지 넉넉처럼 집요하게 파고들어 그 결과 이쪽의 주장에 말려든 것으로 그렇게 이쪽의 주장은 쓰여 있습니다. 참으로 교활한 수단을 부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쟁론을 중화(中華)로 판단한다면 왜 일본에 부속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무엇보다 이쪽에서 아무리 논변을 한다 해도 조선이 일본에 섬의 귀속을 옮겨주는 것과 같은 일은 저나라에서는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일이겠지요.³³⁾

이번 일의 시작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문서를 보면 옛날부터 죽도가 일본에 소속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보이지 않으며, 그 외의 서장이나 경과를 보더라도 일본의 주장이 건강부회의 설이라는 것이 명백하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쓰시마가 과거의 표류민 송환 때 조선의 서간문을 트집 잡아 섬을 탈취하고자 하는 참으로 교활한 수단을 부리고 있다고 보고 있었다. 또한 쓰시마에서 건네는 서신에는 졸렬한 말을 사용하고 있으며 외교교섭의 태도가 무례함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특히 쓰시마에서 보내는 서신에서 에도의 무위로 조선을 위협하는 부분과 대화를 중단시킬 듯한 강한 어조의 협박적인 언사가 있으며 이러한 점은 좋지 못하다는 것도 아울러 언급하고 있다.

스야마는 가시마와 주고받은 서신을 통해 성신의 예로써 조선과 교섭하겠다는 자신의 판단이 올바른 것임을 확인하고 번내 여론을 조금씩 변화시켜 갔다. 그리하여 에도참근을 하는 소 요시자네의 의향도 에도에 보고하여 에도의 판단을 듣는 것으로 변화하게 된다. 그의 대응에 대해 가시마와 아메노모리 호수(雨森芳洲)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

33) 「此御書翰御問答之御書付を見候に、乍恐蔚陵島は朝鮮之屬島にして、八十年前より日本に屬し來り候と有之候事、其證據見へ不申候、然るを漂民を被送還候時之書翰文を只今何角と被仰候様聞へ申候、若し爭勝に成り、日本に屬候様極り候へば、三度之書翰に謬有を以て言勝被成、御取被成たると申物にて可有之、彼方より八十年前蔚陵島日本に附候證文を御出し候得と被申候はゞ、證文に成り候もの可有之哉、三度之書翰は漂民送り之書翰にてこそ候へ、證文には成間敷候、誠に彼方之答之書付に藤かづらのやうにと被書候事、實にもと奉存候、今爭論ど中華より判斷被成候はば、何として日本に御附可有之哉、尤も此方より何程論辯を被設候とも、朝鮮より日本に附け候はんとは隨ひ被中間敷と奉存候、」 「竹島文談」, p.434.

2) 울릉도쟁계 교섭의 결착

소 요시자네(宗義真)를 비롯한 쓰시마번의 에도 참근을 위한 일행이 쓰시마를 출발한 것은 1695년 8월 30일이었다. 그 일행에는 스야마 쇼에몽과 번유 아메노모리 호슈, 집정관 히라타 나오에몽도 포함되어 있었다. 에도로 떠나기 전 스야마는 가시마 호스케의 자문으로 죽도의 상황과 증빙자료를 에도에 보고하기로 자신의 방향을 결정하였고 참근 일행들에게도 같은 여론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그는 도중에 병을 얻어 교토에서 머물며 요양을 해야만 했다. 같은 번유인 아메노모리 호슈와 전 번주 소 요시자네 일행은 1695년 10월 5일 에도에 도착하여 같은 달 15일부터 에도의 중신들과 죽도의 건에 대해 검토를 시작했다. 에도에서는 번주와 에도의 도시요리들이 장군과 상의하여 면밀하게 협의가 진행되었다. 11월 25일에는 로쥬 아베붕고노카미의 가신인 미사와(三沢吉左衛門)과 면담하였으며,³⁴⁾ 보충자료로서 소 요시자네의 구상서와 조선과의 왕복서한, 『여지승람』과 『지봉유설』 등의 문헌을 제출하였다.³⁵⁾

이를 계기로 막부는 죽도에 대한 별도의 조사를 위해 12월 24일 돗토리번에 대해 7가지 질문을 한다.³⁶⁾ “인슈(因州)·하쿠슈(伯州)에 부속한 죽도는 언제부터 양국에 부속된 것인가?” “죽도 이외에도 인백(因伯) 양주에 부속한 섬은 있는가?”라고 질문을 한다. 그런데 돗토리번의 회답서에서는 “죽도(울릉도)·송도(독도)는 이나바(因幡)³⁷⁾·호키(伯耆)의 부속섬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에도에서는 죽도가 돗토리번이 지배하는 부속섬이라고 착각한 듯하다. 돗토리번은 울릉도(죽도)는 물론 독도(송도)까지도 돗토리번의 영역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막부의 죽도에 대한 방침은 굳어져 갔다.³⁸⁾

그러는 사이 아메노모리 호슈는 12월 16일 에도번저의 문고에 있는 기밀문서를 열람하였다. 죽도 문제에 관한 외교관계 문서를 조사하여 열람하고 나름의 식견을 가지고 소 요시자네와 아베 붕고노카미(阿部豊後守)와 절충하는 히라타 나오에몽(平田直右衛門)의 상담에 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서 축적한 지식을 전제로 해서 호슈는 솔직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히라타 나오에몽은 호슈의 자문을 받아 로쥬 아베 붕고노카미에게 교착상태에 빠진 울릉도쟁계에 대해 그 타결책을 비롯한 모든 것을 보고하였다. 1696년 1월 9일 아베 붕고노카미는 히라타 나오에몽을 불러 죽도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34) 박병섭(2007), p.50을 참조.

35) 『竹島紀事』元禄八年(1695)十一月条.

36) 송휘영(2010), pp.57-59의 각주에서 질의서의 전문을 제시하고 있다.

37) 현재의 돗토리현(鳥取県) 동부지방의 옛이름으로 인슈(因州)라고도 함.

38) 전게서, p.60를 참조.

(C-①)<1696년 1월 요시자네와 막각의 상의에서 붕고노카미(豊後守)의 발언>
 죽도가 이나바(因幡)에 속해 있다고 하지만 아직 우리 백성이 거주한 적이 없다. 태덕군(台徳君) 때 요나고무라(米子村)의 마을 사람(街人)이 그 섬에 가서 어채하고자 청원함에 따라 이를 허락하였던 것이다. 지금 그곳의 지리를 헤아려보건대 이나바(因幡)로부터는 160리(里) 남짓, 조선으로부터는 40리 남짓 떨어져 있다. 이는 일찍이 조선의 지계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국가가 만약 병위(兵威)로써 이에 임한다면 무엇이든 얻지 못할 것이 없다. 단지 쓸모없는 소도(小島)를 가지고 이웃나라(隣国)와 우호를 상실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더욱이 처음부터 이 섬을 조선에서 빼앗은 것이 아니므로, 지금 다시 이것을 돌려준다고 말할 수 없다. 단지 우리나라 백성이 가서 어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따름이다. 이번(今朝)의 일은 이전과 다르다. 서로 다투어 싸움이 끊이지 않기보다는 각기 무사하기 위해 이 뜻을 조선국에 잘 알아듣도록 해야 할 것이다.³⁹⁾

죽도에는 일본의 백성이 거주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쿠가와 히데타다(徳川秀忠)⁴⁰⁾ 시기에 어업을 허락했지만 죽도는 이나바(돗토리 동부지방)에서는 160리나 떨어져 있는데 반해 조선에서는 40리이며 조선의 지계임이 틀림없다고 하였다. 그와 같은 작은 섬의 일로 이웃나라와 다투어 우호를 잃는 것은 득책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일본인의 죽도 출어를 금하면 어떤가 라고 말했다. 어업권과 같은 일로 이웃나라 조선과 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1월 28일 로쥬들이 소 요시자네에게 이 방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즉, 당초의 방향과 정반대로 일본 어민이 섬에 가는 것을 금지하는 「죽도도해금지령(竹島渡海禁止令)」이었다. 로쥬 입회하에 에도의 쓰시마번 및 돗토리번저에 전달되는데 아래는 돗토리번에 전달된 문서이다.

(C-②) 지난해(先年) 마츠다이라 신타로(松平新太郎) 인슈(因州) 하쿠슈(伯州)를 영지로 삼고 있을 때, 문의를 한 하쿠슈(伯州) 요나고(米子)의 초닌(町人) 무라카와 이치베에(村川市兵衛)·오오야 진키치(大屋甚吉)가 다케시마(竹島)에 도해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다케시마에 도해하는 건은 금지(禁

39) 「竹島の地因幡に属せりといへども、また我人居住の事なし。台徳君の時に在て、米子村の街人其島に漁せん事を願ひに、依て是を許されし也。今其地理を計るに、因幡を去るもの百六十里計、朝鮮を距る四十里計なり。これ曾て彼の地界たる、其疑なきに似たり。国家若兵威を以てこれに臨まば、何を求むとしてか得べからざらむ。但無用小島の故を以て、好みを隣国に失する計の得たるに非ず。しかも其初是を彼に取に非ざる時は、今また是を返すを以て詞とすべからず。唯我人往き漁するを禁ぜらるべきのみ。今朝議以前に同じからず。其相争ふてうやまざらんよりは、各無事ならむにしかし。宜しく此意を以て彼国に諭すべし。」、「朝鮮通交大紀」卷八。

40) 에도 막부의 2대 장군으로 재임 기간은 1605~1623년이다.

였다는 서장(書狀)을 쓰시마에 보냄으로써 울릉도쟁계의 일본 국내처리가 결착을 보게 되었다.

4. 울릉도쟁계의 결착에 대한 재평가

지금까지 울릉도쟁계의 결착을 두고 조선조정의 강경노선이 이를 주도했다는 논조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쓰시마번의 내부에서도 에도의 명이라는 핑계로 강경하게 맞선 것에 대한 반성이 일기 시작하였다. 2차 죽도교섭이 끝나고 에도 참근을 떠나기까지 3개월간의 변화였다. 다시 말해 스야마 쇼에몽과 아메노모리 호슈와 같은 유학자가 성신의 예로써 외교교섭을 해야 하며 자료에 나타나 있는 그대로를 에도 막부에 솔직히 보고하고 막부의 지시를 받기로 한 것이 온건파인 스야마의 주도로 여론 형성이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스야마의 울릉도쟁계 교섭에 대한 대응과 그 타결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이 사건에 대해 에도로부터 ‘조선어민의 출어를 금지하라’고 명받았을 때 죽도에 대한 내력에 대해 막부의 인식범위를 문의하여 정보를 입수할 필요가 있었고, 쓰시마로서도 있는 그대로를 상세하게 보고하여 방침을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는 반성이다. 1차 교섭이 끝나고도 쓰시마의 교섭 집행관들은 대부분 강경노선으로 쉽게 죽도가 일본의 부속섬이 되리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스야마는 그것이 무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둘째, 쓰시마가 일본령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검토한 13통의 문서 어디에도 죽도가 옛날부터 일본령이라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울릉도쟁계의 발단에서부터 에도에 보고한 내용과 쓰시마 내부에서 논의되는 내용에서도 죽도가 일본령이라는 증거로서는 불확실한 것뿐이라는 것이다. 즉 왕래 서간을 트집 잡아 죽도를 탈취하고자 하는 것은 일본측의 견강부회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죽도교섭의 왕복문서에서 외교교섭의 문서로는 적당하지 않은 언설을 쓰는 등 무례함이 엿보인다는 것과 에도의 무위로써 조선을 위협하는 등 대화중단을 불사하는 강한 어조의 언사가 있음에 대한 자성이다. 이러한 협박적인 태도로는 교섭이 되지 않으며 조선과는 성신의 예로써 대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잘 판별하여 신중하게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넷째, 교섭문서에서 죽도가 80년 전부터 일본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증거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표류민을 송환할 때 조선이 보낸

서간을 트집 잡고 이유를 만들어 언쟁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태도는 무리가 있는 것이며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이다. 교활한 말재주로 다투어 보아도 죽도가 일본땅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교섭의 잘못을 바로잡아 조선과의 인교를 수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것이야말로 쓰시마가 안정되고 일본 전체가 안정되는 올바른 충절이라는 것이다.

다섯째, 죽도를 일본땅에 부속시킨다는 서한을 반드시 받고자 하는 것이 이번 교섭의 방침이었으나, 2도 2명(二島二名)의 서한으로 일본의 죽도에 향후 조선인이 건너와서는 안 된다는 서한을 받게 되면 이는 앞으로 두 나라의 화근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섭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물론 남구만 정권의 강경노선이 전혀 효과를 거두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다. 조선 조정의 강경노선이 있었기에 교섭이 장기 교착 상태에 빠졌고 이 두 가지 일이 어우러져 일본막부의 태도변화를 유도할 수 있었다고 본다. 게다가 안용복의 2차도일로 말미암아 「죽도도해금지」의 사실을 조선측에 통보하지 않고 있던 것을 조선 역관 일행을 쓰시마로 불러들여 전달하게 하였다는 측면에서, 안용복의 2차도일이 울릉도쟁계의 결착을 앞당긴 것도 사실이다.

5. 맺음말

울릉도쟁계의 해결 과정에 대해 기존의 연구에서 남구만 정권의 강경노선이 그 결착을 주도하였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대해, 본고에서는 일본측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당시 쓰시마번의 내부에서도 일본측의 무위(武威)라는 위협을 바탕으로 한 강경책에 대해 반성이 일기 시작하였고 조선에 대해 인교의 도리로써 대응해야 한다는 스야마 쇼에몽과 같은 온건파의 주장이 대두하였으며, 결국 그의 설득과 번내 여론 주도로 말미암아 에도 막부가 조선어민의 죽도도해를 금지하라는 당초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결과인 「죽도도해금지」를 명령하게 되었다는 것을 고찰하였다. 이는 남구만 정권의 강경대응과 아울러 쓰시마 번내의 온건파의 역할이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 유학자이자 쓰시마번의 유력번사였던 스야마 쇼에몽이 있었던 것이다. 그는 가시마 효스케, 아메노모리 호슈와 같은 번사들과의 교분을 통해 자신의 대조선 외교를 상의하였고 결국 교착상태에 빠진 울릉도쟁계에 대해 죽도(울릉도)의 정황을 정확히 에도에 인식하게 함으로써 에도 막부는 독자적으로 돗토리번에 죽도영유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었다. 그 결과 죽도는 조선의

영토임을 인식하여 정반대의 결론으로 결착을 보게 되는 것이다.

본고에서 고찰된 점을 요약하는 것으로 마무리에 가름하고자 한다. 첫째, 죽도교섭의 기회를 틈타서 쓰시마는 죽도(울릉도) 영유를 획책하게 되나 막부의 인식과 정보를 문의하여 방침을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는 인식이 생겨났다. 둘째, 쓰시마가 죽도는 일본령이라고 주장하며 죽도 교섭에 임하지만 증빙 문서의 어디에도 죽도가 일본령이라는 사실이 없다는 것을 스야마는 인식하고 있었고 왕복문서로 생트집을 잡아 죽도를 탈취하는 것은 건강부회라는 반성이 있었다. 셋째, 외교교섭에서 무례함과 무위로 협박하는 등의 태도에 대한 자성과 조선과의 교섭을 선신의 예로써 잘 판별하여 신중하게 교섭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넷째, 교섭문서에서 죽도가 옛날부터 일본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증거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표류민을 송환할 때 조선이 보낸 서간을 트집 잡아 분쟁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태도는 무리가 있으며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무리한 교섭으로 죽도를 일본에 부속시킨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차 두 나라의 화근이 될 것이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양심적 지식인의 생각과 설득이 죽도 교섭의 전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남구만 정권의 강경노선이 전혀 효과를 거두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다. 조선 조정의 강경노선이 있었기에 교섭이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이 두 가지 일이 어우러져 일본막부의 태도변화를 유도할 수 있었다고 본다. 게다가 안용복의 2차도일로 말미암아 「죽도도해금지」의 사실을 조선측에 통보하지 않고 있던 쓰시마변이 조선 역관 일행을 쓰시마로 불러들여 전달하게 하였다는 측면에서, 안용복의 2차도일이 울릉도쟁계의 결착을 앞당기게 된 것이다.

죽도도해금지령 이후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조선령이라는 인식은 메이지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이어졌다. 시마네현의 지적편찬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태정관은 ‘죽도외일도’ 즉 죽도와 송도가 ‘본방과 관계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조사과정에서 ‘죽도와 송도가 조선부속이 되어있는 사정’이라고 하여 내무성이 조선령이라고 하였으므로 당시 최고결정기관이었던 태정관으로서도 두 섬이 일본영토가 아님을 재확인하였던 것이다.

【参考文献】

- 권오엽·오니시 니시테루(2010), 『고문서의 독도 죽도문답』, 한국학술정보.
- 박병섭(2009), 「안용복 사건과 돛토리번」, 『独島研究』 제6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pp.281 -342.
- _____ (2007), 『안용복 사건에 대한 검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송병기(2007), 『울릉도와 독도』, 단국대학교출판부.
- _____ (2008), 「安龍福의 活動과 竹島(鬱陵島)渡海禁止令」, 『東洋學』, 제43집, 단국대학교동양학연구소, 2008, pp.1-14.
- 송휘영(2010), 「일본의 독도에 대한 “17세기 영유권 확립설”의 허구성-일본 외무성의 죽도 홍보 팸플릿의 포인트 3, 4 비판-」, 『민족문화논총』제44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pp.35-70.
- 신용하(1996),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 지식산업사.
- 이 훈(1996), 「조선 후기의 독도(独島) 영속 시비」, 한일관계사연구회편 『독도와 대마도』, 지성의 샘, pp.13-54.
- 하우봉, 「한국인의 대마도 인식」, 한일관계사연구회 편 『독도와 대마도』, 지성의 샘, 1996, pp.123-162.
- 池内敏(2006), 『大君外交と「武威」』, 名古屋大学出版会, pp.245-250.
- _____ (2008), 「安龍福と鳥取藩」, 『鳥取地域史研究』第10号, 鳥取地域史研究学会, pp.17-28
- 川上健三(1966), 『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 古今書院, 1966.
- 越常右衛門(1726), 『竹島紀事』, 对馬藩.
- 佐久間正(1983), 「経世済民と心学-陶山訥庵の研究」, 長崎大学教養部 『長崎大学教養部紀要人文科学編』 第24卷 第1号, pp.37-91.
- 本庄栄治郎(1936), 「近世中期の經濟思想」, 京都帝国大学經濟学会 『經濟論叢編』, 第49卷 第6号, pp.791-815.
- 陶山鈍翁(1915), 「竹島文談」, 『日本經濟論叢』卷13, 日本經濟学会.
- 『通航一覽』卷百三十七·卷百二十八.
- 鳥取県編(1971), 『鳥取藩史』第六卷 「事變史」, 鳥取県立鳥取図書館, p.466-477.

要 旨

今まで竹島一件(=鬱陵島争界)の解決過程に関する研究では、南九万の少論係政権が強硬路線で旋回することによって竹島一件の決着がついたと考える視角が一般的だった。しかし当時の対馬藩内部でも竹島(鬱陵島)が日本領土という主張が無理であるという藩内の強硬派に対して理に適当な現実的対応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穏健派の主張がおこり始めた。本論文では、このような穏健派である陶山庄右衛門に焦点を合わせ、竹島一件の決着過程を評価しようとするものである。特に、1695年 6月から 1696年 1月の「竹島渡海禁止令」が下りるまでの過程を考察しようとした。すなわち、日本側の史料を中心として竹島一件の過程を再評価しようとした。

当時、対馬藩の内部でも日本側の武威という脅威を土台にした強硬策に対する反省がおこり始め、朝鮮に対して隣交の道理をもって対応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陶山庄右衛門のような鳩派の主張が台頭しており、結局彼の説得と藩内の世論主導によって、江戸幕府が朝鮮漁民の竹島渡海を禁止するようという最初の主張とは正反対の結果である日本人の「竹島渡海禁止」を言い付けるようになったということ考察した。しかし、南九万政権の強硬路線が全然効果をおさめていないわけではない。朝鮮朝廷の強硬路線があったから交渉が長期の膠着状態に陥っており、この二つの事が結合して日本幕府の態度変化を誘導することができたと思う。それに安竜福の2次渡日によって竹島渡海禁止の事実を朝鮮側に知らせていなかったことを、朝鮮訳官だちが対馬に来た時伝達したという側面から、安竜福の2次渡日が竹島一件の決着を早めたことも事実である。

キーワード：竹島一件、陶山庄右衛門、竹島渡海禁止、対馬藩、
外交交渉、誠心の礼

투 고 : 2010. 2. 28

1차 심사 : 2011. 3. 19

2차 심사 : 2011. 4. 2